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4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민형배 · 정준호 · 이개호

김문수 · 박지원 · 최혁진

김우영 · 이성윤 · 문정복

안도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표로 왜곡된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관객이 정가로 공연을 관람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일부 대중공연에서는 입장권이 정가 대비 수십 배에 거래되는 등 암표 피해가 심각하지만,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이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정판매 행위 자체와 인지 구매, 나아가 팬미팅 등 교류형 행사까지 규율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가’를 기준으로 부정판매를 명확히 규정하며, 부정판매 사실을 알고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매처와 플랫폼에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이익의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가와 신뢰가 작동하는 공연시장을 복원하여,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니다(안 제4조의2, 제42조의2 신설 등).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공연”을 “공연 또는 관람객과의 교류나 소통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을 “입장권등의 판매정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등의 구입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하 “자동화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구입하는 행위
 3.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제조·유통하는 행위
 4. 부정판매되는 입장권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는 행위
- ③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 받은 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사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호 중 “자”를 “자(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1조제1항제1호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부정판매되는 입장권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입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 -----공연 또는 관람객과의 <u>교류나 소통을 위하여 개최하</u> <u>는 행사</u> ----- ----- ----- ----- ----- ----- ----- ----- <u>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u> ----- ----- ----- ----- ----- -----.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등의 구입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하 “자동화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구입하는 행위

3.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제조·유통하는 행위

4. 부정판매되는 입장권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는 행위

③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사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6. (생략)

<신설>

제43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1. · 2. (생략)

제41조(벌칙) -----

-----.

1. -----
-자(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 다)

2. ~ 6.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몰수·추징) 제41조제1항제1호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제4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부정판매되는 입장권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입한 자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⑤ (생 략)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